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88
----------	-----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29일

발 의 자 : 이동현 의원 (1명)

찬 성 자 : 강대호, 김경우, 김경영, 김태호, 김호평,
박기재, 안광석, 전병주, 최 선, 한기영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2조 ‘청소년 정의’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의가 서울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청소년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과 차이점을 둘 이유가 없기에 일부 개정하여 통일성을 주고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2조의 청소년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과 통일시켜 법의 명확성 확립.
- 청소년 정의를 기존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인 사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일부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u></p> <p>3. · 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항에 의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u></p> <p>3. · 4. (현행과 같음)</p>